



시 보



제1757호 2026. 9. 9. (수)

공 고

- 「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- 「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공고 제2026 - 1213 호

「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9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- 요트마리나 시설관리위원회를 상설 운영 방식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·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15조)
- 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(안 17조)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9. 9. ~ 10. 6. [28일간]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7.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 없음

8. 예산사항 : 해당 없음

9. 의견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6일까지 목포시장(해양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제출처 : 우)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용당동),
해양수산환경국 해양개발과 (2층)

다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061-270-3647)

10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해양개발과(☎061-270-85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 중 “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사용료 감면)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50퍼센트 이내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5조(사용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.18 민주유공자 : 50퍼센트	2. ----- ----- ----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-----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) ① ~ ③ (생 략)	제17조(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	<삭 제>
⑤ ~ ⑦ (생 략)	④ ~ ⑥ (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공고 제 2026 - 1214 호

「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9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026년 목포시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에 따라 요트마리나 시설관리위원회를 상설 운영 방식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·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개정(안 제28조)

3. 개정조례[안]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9. 9. ~ 10. 6. [28일간]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7.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 없음

8. 예산사항 : 해당 없음

9. 의견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6일까지 목포시장(해양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제출처 : 우)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용당동),
해양수산환경국 해양개발과 (2층)

다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(061-270-3647)

10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해양개발과(☎061-270-85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구성 운영”을 “구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,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을 마치면 해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8명 이내로 <u>구성</u> 운영할 수 있으며,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28조(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구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<u><신 설></u>	<u>②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고,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을 마치면 해산한다.</u>
<u>②·③</u> (생략)	<u>③·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